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7
----------	-----

제출년월일 : 2006. 6. 5.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수요자 중심의 법률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글맞춤법에 의한 법령제문 띄어쓰기 및 우리 구 직제 개편에 의한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 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 띄어쓰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로 한다.
- 제2조,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를 “총무과”로 한다.
-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2005. 4. 6)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의사항 : 필요없음

라. 입법예고 : 생략

마. 사 유 :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규칙으로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내부 사무처리에 대한 변경임.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로 한다.

제2조,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를 “총무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별지 서식] 상담접수처리기록부중 “※ 구분 : 민간인, 타기관, 구, 동, 실·
과”를 “※ 구분 : 민간인, 타기관, 구, 동, 담당관·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설치) 상담실은 <u>기획예산과</u>에 둔다.</p>	<p>제2조 (설치) ----- <u>총무과</u>에 -----</p>
<p>제4조 (운영) ①상담운영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u>기획예산과장</u> 책임하에 운영한다.</p> <p>②(생략)</p>	<p>제4조 (운영) ①----- ----- <u>총무과장</u> ----- -----</p> <p>②(현행과 같음)</p>
<p>제6조 (상담관) ①상담관은 <u>기획예산과장</u>, 의회법제담당주사가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u>기획예산과</u> 의회법제담당 근무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p> <p>②~③(생략)</p>	<p>제6조 (상담관) ①----- <u>총무과장</u>, ----- ----- <u>총무과</u> ----- -----</p> <p>②~③(현행과 같음)</p>
<p>제7조 (임석 등) <u>기획예산과장</u>은 필요한 경우 해당과의 담당주사 또는 실무자를 상담시 임석시키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과에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p>	<p>제7조 (임석 등) <u>총무과장</u> ----- ----- ----- ----- -----</p>

<별지 서식>

구분	상담접수처리 기록부						결재			
	번호	접수인	상담방법	구두 서면 전화	상담관	응답내용				
성명및 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직업						
문의제목 내 용	본인 회시	응답 일자		회시 일자		자문 위원				
	부서 통지	시행 일		부서 명		요지				
	정책 보고	일자		직위		수명 사항				
	비고									

※ 구분 : 민간인, 타기관, 구, 동, 담당관·과